

‘99.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

(의안번호 제537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	1999. 3. 20	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	1999. 3. 20	
다. 상 정 일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1999. 3. 24 <input type="checkbox"/> 1999. 6. 28	총무위원회 상정·계류 총무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이유

- 0 현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이므로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에 따른
부지를 매입하여 쓰레기로 인한 주민의 불편해소 및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
기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« 취득재산 »

- 0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지 및 건물매입
- 재산의 표시(토지 : 27필지 70,270m², 건물 1동 434.54m²)
 - 토지 : 삼산면 판곡리 348번지 외 26필지(101,965m² 중 70,270m²)
 - 건물 : 1동 434.54m²
 - 취득재산 가액 : 933,010천원
 - 토지 : 583,010천원
 - 건물 : 350,000천원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0 삼산면 판곡리 348번지 외 26필지 상에 70,270m²(21,256평)규모의 신설 쓰레기매립장
시설부지로
- 0 현 쓰레기매립장이 포화상태로 향후 1~2년 후면 쓰레기를 처리할 수가 없어 군민불편
및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새로운 매립장을 설치하여야 함은 타당하나
- 0 인근 대독리, 판곡리 마을 주민들의 집단 민원우려가 있으므로 공청회, 반상회 등
인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의하여야 될 것이라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1999. 6. 28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